

고 시

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17-93호

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
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9조 규정에 의거 신반포6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(경미한 변경)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49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7. 8. 31.

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
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신반포6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
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 - 가. 정비구역의 위치 :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74-2호 외 1필지
 - 나. 정비구역의 면적 : 34,745.90m²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 - 가. 사업시행자의 성명 : 신반포6차아파트 재건축조합
(대표 김진언)
 - 나. 사업시행자의 주소 :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213
(잠원동 75-13 반포쇼펍타운 7동 2층 1호)

4. 관리처분계획인가일 : 2016. 8.29.

5.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

가.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

1) 대지면적 : 30,531.90m²

2) 지하2층/지상35층, 아파트 7개동(757세대) 및 부대·복리시설

나.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(상가 해당없음)

공급대상	주택 규모별 공급세대수											
	계	59.98	59.97	59.97	84.98	84.95	84.94	98.99	98.87	98.96	114.96	114.78
계	757	85	19	23	186	123	31	66	68	31	91	34
토지등소유자	559	11			186	112	13	66	62	19	89	1
일반분양	142	38	5	18		11	17		6	12	2	33
보류지	3	1	1				1					
재건축소형(임대)	53	35	13	5								

다.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 명세

1) 신 설 : 도로 1,377.90m², 공원 2,000.00m², 녹지 836.10m²

2) 폐 지 : 해당없음

라. 기존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: 2017. 5.27 ~ 2017. 9.30.

※ 관계서류는 서초구청 주거개선과(☎2155-7345)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.